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국제자유도시관광팀 기획조정팀
	2009년 12월 9일(수요일)	연락	강창민 연구위원 017-361-3937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과 자치 입법권 확대 동시에 확보해야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법과 조례제정권에 관한 헌법적 검토”연구에서 제언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경우에 그 핵심적 내용으로 자치입법권 확대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하더라도 헌법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보다 폭넓은 자치입법권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보장하기로 한다는 근거만 들어갈 수 있다면, 법률을 통해 자치입법권 확대가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
 - 현재 한국 지방자치에서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고 있음.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향유하는 자치입법권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법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부령과 같은 하위 법령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
 - 또한 위헌 논란이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는 독자적으로 주민의 권리제한·벌칙제정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더욱 미흡한 것으로 만들고 있음.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위헌 시비에 막혀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권한 이항에 있어서도 개별적 열거적인 이양방식에 갇혀 있어서 포괄적인 조례 위임방식에 의한 권한 이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헌법개정과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향후 있을 헌법개정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자치입법권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자치입법권의 특례를 인정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따라서 향후 헌법개정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면 그 핵심내용으로 자치입법권 확대 부분이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임